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사업 구분	[] 전면 재정비사업 [] 연계형 개발사업 []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	---	--	--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예) 〇〇〇〇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추진위원회 설립 명세	설립목적		
	예) 〇〇〇〇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 명칭	구역 면적 (㎡)
		위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명부 2.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